

定 款



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

정 관

* 전문 개정 1990. 8. 15.

* 개정(44차) 2024. 2. 6.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법인은 원불교 정신에 입각하여 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아동복지, 청소년복지, 노인복지, 여성복지, 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,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한 복지사업 및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해당하는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(이하 본 법인)이라 칭한다.

제3조 (사무소)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56(신내동)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시설지원사업
2.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및 시설지원사업
3.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, 보육시설 운영사업
4.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운영사업
5.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적 기업 운영
6. 무료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사업
7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
8. 그밖에 본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자산 및 회계

제1절 자산

제5조 (자산구분)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,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1. [표1]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부동산

- 3.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
-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[표1-1]과 같다.
-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제6조 (자산의 관리) ①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교환·임대·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포기,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법인이 매수·기부·채납·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, 취득재산의 종류·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조 (경비와 유지방법) ① 본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수익사업의 수익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절 회계

제8조 (회계의 구분 등) 본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제9조 (회계의 처리) 본 법인의 회계처리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 (회계연도)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1조 (사업계획 및 예산)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확정 후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(보건복지부령)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사업실적 및 결산)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(보건복지부령)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잉여금의 처리)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14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)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15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이사 1인
2.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.
3. 이사 8인 (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)
4. 감사 2인

제16조 (임원의 선임) ① 대표이사, 이사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상임이사를 둘 경우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선임한다.
- ③ 이사정수의 1/3(소수점 이하는 버림) 이상은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선임한다.
- ④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임원선임의 제한) ① 본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아니어야 한다.

제18조 (임원의 임기 등) ① 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임원의 결격사유)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제20조 (임원의 해임) ① 본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

- ② 본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1. 법령,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
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 3. 직무태만·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
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- 제21조 (임원의 직무)** ① 대표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,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
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제22조 (대표권의 제한) 본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
제23조 (임원의 대우) 본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24조 (겸직금지)** ① 이사는 본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본 법인의 이사,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 4 장 이 사 회

- 제25조 (이사회 구성)** ① 본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6조 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·실적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6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7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
8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27조 (이사회 소집 등)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8조 (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회 의사에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29조 (의결제척사유)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제30조 (이사회 회의록)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임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,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수 익 사 업

제31조 (수익사업의 종류) ① 본 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사에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사에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
제32조 (수익의 처분 및 관리)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, 이사회 의사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

제33조 (사무처)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4조 (상근임직원) ① 법인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직원을 둔다.

② 상근임직원의 임용·복무·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5조 (종사자 임명)

① 법인 산하 시설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.

② 시설의 중간관리자(사무국장, 부장, 실장, 과장)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장이 임명한다.

③ 시설의 직원은 시설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법인으로 보고한다.

제36조 (근무 정년) 법인 산하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, 시설장은 만 65세까지로 한다. 단, 자부담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직원의 경우는 산하 시설관리 규정 인사관리에 따른다.

제37조 (시설장 임기)

①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연임 대상자는 시설장 평가를 거쳐 이사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38조 (포상) 대표이사는 법인 산하 직원이 다음의 경우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.

①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

② 법인 또는 시설의 발전과 명예를 크게 드러나게 한 자

③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회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

제39조 (징계)

① 법인 산하 직원의 징계는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법인 산하 시설장은 다음의 경우 징계할 수 있다.

1. 법인 정관 및 시설의 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

2. 직무수행 중 직책의 품위 또는 법인과 시설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시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

제40조 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과 같다.

① 견책(譴責) : 전과(前過)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며 훈계하고 뇌우치게 한다.

② 감봉(減俸) 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/3을 감한다.

③ 정직(停職) 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.

④ 강등(降等) :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.

⑤ 파면(罷免) : 직무와 신분을 박탈한다.

제41조 (인사위원회)

- ① 법인 및 시설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며, 위원은 이사와 감사, 시설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인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시설장 인사위원이 인사 대상일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42조 (인사위원회 임무)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① 시설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②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
- ③ 시설장 및 직원의 법인 시설 간 이동에 관한 사항

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

제43조 (정관변경)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4조 (해산 및 합병) 본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5조 (잔여재산의 귀속) 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제 8 장 공 고 방 법

제46조 (공고의 방법) ① 본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.

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
제 9 장 보 칙

제47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

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민법」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제48조 (운영규정)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49조 (규정의 제·개정)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의 내용 중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

부 칙

- ① (정관개정) 1. 1990년 8월 15일에 개정한다.
2. 본 법인의 정관을 1998년 9월 4일에 개정한다.
3. 본 법인의 정관을 2000년 9월 17일에 개정한다.
4. 본 법인의 정관을 2003년 5월 6일에 개정한다.
5. 본 법인의 정관을 2004년 3월 4일에 개정한다.
6. 본 법인의 정관을 2005년 2월 22일에 개정한다.
7. 본 법인의 정관을 2005년 7월 14일에 개정한다.
8. 본 법인의 정관을 2006년 2월 16일에 개정한다.
9. 본 법인의 정관을 2006년 5월 22일에 개정한다.
10. 본 법인의 정관을 2006년 8월 15일에 개정한다.
11. 본 법인의 정관을 2007년 2월 20일에 개정한다.
12. 본 법인의 정관을 2007년 8월 15일에 개정한다.
13. 본 법인의 정관을 2008년 6월 10일에 개정한다.
14. 본 법인의 정관을 2009년 8월 14일에 개정한다.
15. 본 법인의 정관을 2010년 2월 18일에 개정한다.
16. 본 법인의 정관을 2010년 8월 15일에 개정한다.
17. 본 법인의 정관을 2010년 12월 14일에 개정한다.
18. 본 법인의 정관을 2011년 8월 15일에 개정한다.
19. 본 법인의 정관을 2012년 2월 14일에 개정한다.
20. 본 법인의 정관을 2012년 3월 20일에 개정한다.
21. 본 법인의 정관을 2012년 8월 15일에 개정한다.
22. 본 법인의 정관을 2013년 3월 5일에 개정한다.
23. 본 법인의 정관을 2013년 7월 23일에 개정한다.
24. 본 법인의 정관을 2013년 12월 12일에 개정한다.
25. 본 법인의 정관을 2014년 2월 10일에 개정한다.
26. 본 법인의 정관을 2014년 7월 22일에 개정한다.
27. 본 법인의 정관을 2014년 11월 21일에 개정한다.
28. 본 법인의 정관을 2015년 5월 18일에 개정한다.
29. 본 법인의 정관을 2015년 7월 23일에 개정한다.
30. 본 법인의 정관을 2016년 2월 26일에 개정한다.
31. 본 법인의 정관을 2016년 5월 12일에 개정한다.
32. 본 법인의 정관을 2016년 7월 28일에 개정한다.
33. 본 법인의 정관을 2017년 2월 24일에 개정한다.
34. 본 법인의 정관을 2017년 7월 24일에 개정한다.
35. 본 법인의 정관을 2017년 11월 29일에 개정한다.
36. 본 법인의 정관을 2019년 5월 2일에 개정한다.
37. 본 법인의 정관을 2020년 2월 20일에 개정한다.
38. 본 법인의 정관을 2020년 5월 14일에 개정한다.
39. 본 법인의 정관을 2021년 2월 25일에 개정한다.

- 40. 본 법인의 정관을 2021년 12월 20일에 개정한다.
 - 41. 본 법인의 정관을 2022년 5월 30일에 개정한다.
 - 42. 본 법인의 정관을 2022년 9월 8일에 개정한다.
 - 43. 본 법인의 정관을 2023년 9월 21일에 개정한다.
 - 44. 본 법인의 정관을 2024년 2월 6일에 개정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③ (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)
- 1. 본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[표1]과 같다.
 - 2. 본 법인의 ‘재단법인 유린보은동산’ 으로 명칭변경 당시 임원은 [표2]와 같다.
 - 3. 본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[표3]과 같다.
- ④ 2021년 12월 20일 현재의 법인 기본재산은 별첨 [표1-1]과 같다.



[표1]

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

구 분	소 재 지	규 모	평가가액 (단위:천원)	출 연 자	비 고
토 지	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(신내동)	3,510㎡	2,939,400	사회복지법인 개성 유린관	



[표1-1]

현존의 기본재산 목록 (2021. 12. 20. 현재)

유형	구분	소재지	규모	평가가액 (단위:천원)	출연자	비고
목 적 사 업 용 재	부동산 (토지)	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(신내동)	3,478㎡	12,173,000	사회복지법인 개성 유린관	
		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99-15(신내동)	131㎡	340,600	자립부모회	
	부동산 (건물)	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(신내동)	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5층 노유자시설(가동) 1층 418.89㎡ 2층 418.49㎡ 3층 404.99㎡ 4층 404.99㎡ 5층 255.97㎡ 옥탑1층 16.44㎡ 옥탑2층 16.44㎡ 지하 418.49㎡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5층 노유자시설(나동) 1층 621.31㎡ 2층 621.31㎡ 3층 621.31㎡ 4층 621.31㎡ 5층 701.42㎡ 중5층 63.72㎡ 옥탑 54.18㎡ 지층 443.78㎡ 부속건물(다동) 경량철골조 판넬 경사지붕 1층 창고 33.6㎡	4,474,442	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	
			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6층 노유자시설(라동) 1층 227.62㎡ 2층 307.74㎡ 3층 307.74㎡ 4층 306.83㎡ 5층 306.83㎡ 6층 74.10㎡ 옥탑 40.41㎡ 지층 540.03㎡ 경량철골조 판넬경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근로복지시설(마동) 1층 188.83㎡ 2층 48.00㎡			
			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층 노유자시설(근로복지시설) 1층 75.88㎡ 2층 72.83㎡ 3층 76.44㎡	168,863	자립부모회	
현 금	국민은행 정기예금	54,386천원 20,000천원	74,386	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		

[표2]

임 원

직위	임기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
대표이사	1988.12.30.-1991.12.29.	한광수	400722	서울시 용산구
이 사	1988.12.30.-1991.12.29.	한지현	430713	서울시 강남구
이 사	1988.12.30.-1991.12.29.	최순영	260126	서울시 종로구
이 사	1988.12.30.-1991.12.29.	이건형	360901	서울시 영등포구
이 사	1988.12.30.-1991.12.29.	김종호	370515	서울시 종로구
이 사	1988.12.30.-1991.12.29.	양영식	300430	서울시 용산구
이 사	1988.12.30.-1991.12.29.	남궁원	471222	서울시 종로구

[표3]

법인이 사용할 인장

